

1. 개정이유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72호, 2026. 3. 17.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 등의 보수 신고 관련 서식을 개편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 따른 조문 정비(안 제7조 등)

상위 법령의 조항 이동 및 예술인·노무제공자 관련 준용규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

나.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22호의24서식 신설 등)

근로자 월 보수 신고 신설 등에 따라 보수 신고 관련 서식을 신설 및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를 각각
“법 제48조의2제10항제1호”로 한다.

제9조 중 “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를 “영 제56조의5제9항제1호”로 한
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를 “영
제56조의5제9항제1호”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법 제48조의2제5항”을 “법 제48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영 제56조의5제4항 또는 제5항”을 “영 제56조의5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
13서식”을 “별지 제22호의13서식”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
류”를 “변경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계약서 사본(문화예술용역 관
련 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예술인의 보수액 지급 관
련 자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의4 전단 중 “법 제16조의6제1항·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16조의6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 및 제5항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를 각각 “법 제48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6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6(월 보수 등의 신고) 영 제19조의7제1항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월 보수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24서식의 월 보수 신고서에 따른다.

제1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의7제3항·제6항”을 “영 제19조의7제4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6조의9제1항 중 “영 제19조의7제7항제1호”를 “영 제19조의7제8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9조의7제7항제4호”를 “영 제19조의7제8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19조의7제7항제5호”를 “영 제19조의7제8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9조의7제7항제7호”를 “영 제19조의7제8항제7호”로 한다.

제16조의10의 제목 “(보수총액의 수정신고)”를 “(월 보수 등의 수정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를 “법 제48조의2제10항제2호”로, “보수총액”을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월 보수·보수총액·월 보수액”으로,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월 보수 수정신고서
 2. 예술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2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3.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5서식의 월 보수액 수정신고서
- 제20조 중 “영 제56조의5제6항제2호”를 “영 제56조의5제9항제2호”로 한다.

제25조제3항 전단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 중 “법 제22조의2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2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 제31조제2항”으로, “보수총액신고서”를 “보수총액신고서, 별지 제22호의24서식의 월 보수 신고서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월 보수액 신고서”로,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내역”을 “충당신청서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과납보험료 충당·반환신청서에 그 충당·반환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 제3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31조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 제3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

항 중 “법 제23조제5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제31조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로 한다.

제31조의2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로 한다.

제32조의2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내지 제4항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각각 “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로 한다.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로 한다.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로 한다.

제33조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를 각각 “영 제56조의5제9항제3호”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22조의2제3항(법 제48조

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22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41조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를 “법 제48조의2제10항제4호”로 한다.

제42조를 제41조의2로 하고,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예술인의 보수총액 신고) 영 제56조의5제4항에 따른 예술인에 대한 보수총액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다

제42조의7제1항 본문 중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을 “별지 제22호의25서식의”로, “신고서”를 “수정신고서”로 한다.

제42조의11제1항 본문 중 “신고서”를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5서식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수정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중 “제48조의2제8항제1호”를 “제48조의2제10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제48조의2제8항제1호”를 “제48조의2제10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제56조의5제6항제1호”를 “제56조의5제9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6조의5제6항제1호”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제56조의5제9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6서식 및 별지 제22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8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7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8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22호의9서식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7제7항제4호”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7제8항제4호”로, 같은 서식 중 “제8항제1호”를 “제9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22호의11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1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의17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7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8항제5호”로 한다.

별지 제22호의18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7항제7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8항제7호”로 한다.

별지 제22호의19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의2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제56조의5제6항제2호”를 “제56조의5제9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 중 “제48조의2제8항 제3호”를 “제48조의2제10항 제3호”로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중 “제22조의2제1항 · 제48조의2제8항 제3호 · 제48조의3제8항 제3호 · 제48조의6제13항 제3호”를 “제22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의3서식 중 “제22조의2제1항 · 제48조의2제8항 제3호 · 제48조의3제8항 제3호 · 제48조의6제13항 제3호”를 “제22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제31조제3항 · 제56조의5제6항 제3호 · 제56조의6제8항 제3호”를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 중 “제48조의2제8항 제3호”를 “제48조의2제10항 제3호”로 한다.

별지 제38호의3서식 중 “제48조의2제8항 제3호”를 “제48조의2제10항 제3호”로 한다.

별지 제38호의5서식 중 “제48조의2제8항 제3호”를 “제48조의2제10항 제3호”로 한다.

별지 제38호의6서식 중 “제48조의2제8항 제3호”를 “제48조의2제10항 제3호”로 한다.

별지 제38호의7서식 중 “제48조의2제8항 제3호”를 “제48조의2제10항 제3호”로 한다.

호”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제56조의5제6항제3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제56조의5제9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중 “제48조의2제8항제4호”를 “제48조의2제10항제4호”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을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월평균(예상)보수액”을 각각 “월 (예상)보수”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항”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2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용되거나 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별지 제22호의5서식 및 별지 제22호의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보수총액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보수총액을 신고하면서 보험료의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주	상호·법인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된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변경 내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의 종류 및 업종코드				
	공익법인등의 사업수익		원	원	
	총 상시근로자 수 (전년도)		명	명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	[]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변경 사유 발생일				총사업장수	
변경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변경 후 기업규모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규모기업	변경적용 개시일	
변경 사유			

첨부서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등의 사업수익”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공시된 결산 서류에 따른 사업수익이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규모 기준 이하인 경우만 적용됩니다.

작성방법

1. “사업의 종류 및 업종코드”란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코드(숫자 5자리)를 적습니다.
2. “공익법인등의 사업수익”란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공시된 결산 서류에 따른 사업수익을 적습니다. 이 경우 사업수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중 ㉔사업수익(기부금+보조금+회비수익+기타)을 적습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란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를 적습니다.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란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해당 여부를 표시합니다.
5. “변경 사유 발생일”과 “변경 사유”란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 그 변경 사유 발생일 및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6.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적기 바랍니다.

사업장(2)	사 업 장 관 리 번 호			
	명 칭			
	소 재 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3)	사 업 장 관 리 번 호			
	명 칭			
	소 재 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4)	사 업 장 관 리 번 호			
	명 칭			
	소 재 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5)	사 업 장 관 리 번 호			
	명 칭			
	소 재 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6)	사 업 장 관 리 번 호			
	명 칭			
	소 재 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7)	사 업 장 관 리 번 호			
	명 칭			
	소 재 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8)	사 업 장 관 리 번 호			
	명 칭			
	소 재 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9)	사 업 장 관 리 번 호			
	명 칭			
	소 재 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4서식]

()년도 예술인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매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합니다(단, 신고 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득일(전입일)	전보일(전출일)	① 종사지 코드	② 연간 보수총액(원)			

③ 고용보험 단기에예술인 보수총액

④ 합계

⑤ 매월 말일 현재 단기에예술인 수(※ ③ 해당 단기에예술인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단기에예술인 수(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사업장 예술인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귀하

작성방법

- ①란의 “종사지 코드”는 신고연도 마지막 날(보험관계가 소멸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소멸일을 말합니다)에 예술인이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의 우편번호를 적습니다.
* 다만, 기간이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예술인은 본사 주소지의 우편번호를 적습니다.
* 사업주별 사업장 리스트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②~④란의 “보수총액”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총액을 적습니다.
* 휴업·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말합니다) 중의 보수는 보수총액에 포함합니다.
- 사업장 정보가 틀린 경우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예술인의 고용정보가 틀린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용 변경 신고서”, 신고가 누락된 예술인을 추가 신고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별도 제출합니다.
- 예술인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 전보 이전 사업장에서는 “전보일(전출일)”란에 전보된 일자를 적고, 전보 이후 사업장에서는 “취득일(전입일)”란에 전입일을 적습니다.
※ 변경 및 정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서 다운로드하고,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과납 보험료 선납 총당 또는 반환 신청서

과납된 고용보험료가 있을 경우 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선납 총당 또는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 입금 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선납 총당 []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 각각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 보수)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5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산재보험은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구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체류 자격	대표자 여부	월 소득액 (소득월액·보수 월액·월 보수) (원)	자격 취득일 (YYYY. 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 취득 부호	특수 직종 부호	직역 연금 부호	자격 취득 부호	보험료 감면 부호	공무원·교직원 회계명 /부호	직종명 /부호	직종 부호	1주 소정 근로 시간	계약 종료 연월 (계약직만 작성)	보험료 부과구분 (해당자만 작성)			
1			[]예 []아니오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산재보험			
2			[]예 []아니오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산재보험			
3			[]예 []아니오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산재보험			
4			[]예 []아니오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산재보험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 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및 같은 영 별표 4의3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통해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유의사항

건강보험	1.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 산재보험	1. 임의가입대상인 외국인 및 공무원은 "외국인(공무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국민연금	1. 특수직종번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 월 납부 희망”의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 산재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으로 신고합니다). 2. “월 보수”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개월 간의 보수(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에 대한 보수를 말하며, 이후에는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함)를 적습니다. 본 신고서 제출 당시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 금액을 적습니다. - 근로자의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3. “1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종사자 여부에 대해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 종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구분의 부호 및 사유는 3쪽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부호란에는 해당하는 부호를, 사유란에는 대상 종사자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

자격취득 부호 등

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 01. 18세 이상 당연취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나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근로시간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3. 18세 미만 취득

0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14. 일용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등(「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라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5.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건강보험

[자격취득 부호]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종가입 30.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 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벽지(사업장) 42. 섬·벽지(거주지) 81. 휴직

고용보험
·
산재보험

[직종 부호] 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1	O	O	x	x	09.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0. 3개월 미만 계약직으로서 월보수 80만원 미만 근로자 11.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07. 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52	O	x	x	x	03. 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13.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56	x	x	O	x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 차상위계층,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60	O	O	x	O	27.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당연적용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 연월일이 다른 경우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산재보험은 7일)
------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	----	----	-------------------------------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실 연월일 (YYYY.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 부호	초일취득 ・ 당월상실자 납부여부	상실 부호	연간 보수 총액				상 실 사 유		월 보수(원)				
								해당 연도		전년도				퇴직월 3개월전	퇴직월 2개월전	퇴직월 전월	퇴직월	
								보수 총액	근무 개월 수	보수 총액	근무 개월 수	구체적 사유	구분 코드	고용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산재보험	산재보험	산재보험	
						희망 []												
						희망 []												
						희망 []												
						희망 []												
						희망 []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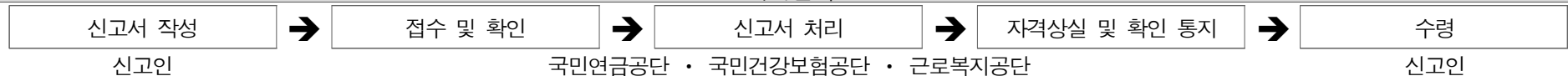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공통사항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 상실 연월일란에 모두 함께 적되, 해당 칸 안에서 줄을 달리하고 괄호로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예) yyyy. mm. dd.(건강보험) yyyy. mm. dd.(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건강보험	1. 건강보험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3. 연도 중 요율 변경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자활근로종사자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의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15·16·20·21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습니다. (예)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 취득·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에 “√” 표시를 합니다.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6.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 무보수 대표이사 22. 근로자 제외 26. 취득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4. 취득취소의 경우 상실부호란에 ‘26’을 적습니다.
건강보험	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취득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16> 국적상실<17> 이민출국<19> 가입제외(외국의 법령)<24> 가입제외(외국의 보험)<25> 가입제외(사용자와의 계약)<26> 무보수대표자<58> 그 밖의 사유(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등)<13> 2. “해당 연도”란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지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수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변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지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⑱국의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⑱-1야간근로수당과 ⑳비과세소득 계 등에 지급 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무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예)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상실사유”란에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습니다. <상실사유 구분코드>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3. “월 보수”란에는 퇴직월, 퇴직월의 전월·2개월전·3개월전에 근로자에 지급한 보수(「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를 월별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년 월분)

※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 사업 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갈음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등 미승인 하수급인만 적용됩니다)										
	소재지										공사명(유기사업명)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팩스번호									
고용관리 책임자 (※건설업만 해당)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직무내용)					(근무지)[]본사 []해당 사업장(한정) []다른 사업장(한정)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국적	체류자격																				
전화번호(휴대전화)																					
직종 부호																					
근로일자 ("o" 표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31					31					31					31					
근로일수	일평균 근로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월 보수		원					원					원					원				
임금총액		원					원					원					원				
보수지급기초일수		일					일					일					일				
이직사유 코드																					
보험료부과구분(해당하는 사람만 적습니다)																					
부호	사유																				
국세청 일용 근로 소득 신고	지급월	월					월					월					월				
	총지급액 (과세소득)	원					원					원					원				
	비과세소득	원					원					원					원				
	원천징수액	원					원					원					원				
	소득세	원					원					원					원				
	지방 소득세	원					원					원					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
소득신고
관련

1. 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주가 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을 작성·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으로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적지 않으며,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적지 않거나 잘못 적은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부실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건설업 등 고용보험 일괄적용 사업장에서 사업개시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번호"란에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2. "직위"는 고용관리 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예시: 부장, 팀장, 과장, 사원 등)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고용관리 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며, "직무내용"은 고용관리 책임자의 임무 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코드 번호를 적습니다(직무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 모두 적을 수 있습니다).
01. 인사·노무 02. 회계·세무·경리 03. 경영·관리 04. 홍보·영업 05. 기술·기능 06. 그 밖의 직무
3.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4. "직종부호"는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간주)을 말하며, "월 보수"란에는 해당 월에 발생한 보수의 총액을 적습니다.
6.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으로써, 해당 월에 발생한 금액을 적습니다.
7. 보수지급기초일수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합니다.(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일수는 제외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 보수가 지급된 일수는 포함)
8. "이직 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질병·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9. "보험료부과구분"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적습니다)

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인정직업능력개발	
51	○	○	x	x	09.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1.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2	○	x	x	x	03. 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생) 13.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54	○	x	○	○	22.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55	x	x	○	○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07. 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6	x	x	○	x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8	○	x	x	○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10. "지급월"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11. "총지급액(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2.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3.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금액)]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4. 원천징수액란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작성 방법

- 과납 보험료 선납 총당 또는 반환 신청서

반환금 입금 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	-------	------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년도 예술인 고용보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illegible]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4서식]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자 월 보수 신고서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매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합니다(단, 신고 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우편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전화번호								
① 귀속년월		년 월		② 보수 지급년월		년 월		③ 신고인원		명		④ 총 보수		원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보험구분		자격취득일 (전입일)		⑤ 보수 산정기간		⑥ 월 보수			
												고용보험		산재보험	
1						☐ 고용 ☐ 산재				~		원		원	
2						☐ 고용 ☐ 산재				~		원		원	
3						☐ 고용 ☐ 산재				~		원		원	
4						☐ 고용 ☐ 산재				~		원		원	
5						☐ 고용 ☐ 산재				~		원		원	
6						☐ 고용 ☐ 산재				~		원		원	
7						☐ 고용 ☐ 산재				~		원		원	
8						☐ 고용 ☐ 산재				~		원		원	
9						☐ 고용 ☐ 산재				~		원		원	
10						☐ 고용 ☐ 산재				~		원		원	
그 밖의 근로자 월 보수 합산액 ※ 산재보험만 작성		⑦ 월 80만원 미만이면서 3개월 미만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인원:)		원 (명)		⑧ 산재보험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인원:)		원 (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1항 본문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월 보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유의사항

1. 사업주는 보수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자 월 보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근로자 월 보수 신고를 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1. “①귀속년월” 란에는 근로를 제공받은 연월을 적습니다.
2. “②보수 지급년월” 란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한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3. “③신고인원” 란에는 이 신고서에 신고하는 총 인원(그 밖의 근로자(⑦·⑧) 포함)을 기재합니다.
4. “④총 보수” 란에는 이 신고서에 신고하는 월 보수의 합산액(⑥+⑦+⑧)을 적습니다.
5. “⑤보수산정기간” 란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산정한 기간을 날짜형식(예: 2027.01.01.~2027.01.31.)으로 기재합니다.
6. “⑥월 보수” 란은 보수지급일에 지급한 총 소득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⑦·⑧란은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로서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3개월 미만 계약직 근로자로서 월 80만원 미만의 상용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 보수의 합계액과 해당 인원을 기재합니다.
8.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 전보 이후 사업장에서는 “자격취득일(전입일)” 란에 전입일을 적고 전입일 이후 월 보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납 보험료 선납 총당 또는 반환 신청서

과납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있을 경우 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선납 총당 또는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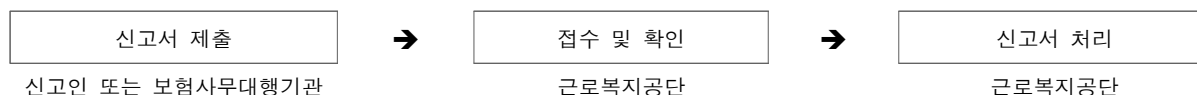
반환금 입금 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납보험료의 []선납 총당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4서식]

과납 보험료 충당·반환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 (대표자)	사업장관리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내용	과납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 입금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법인은 법인명의 계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충당·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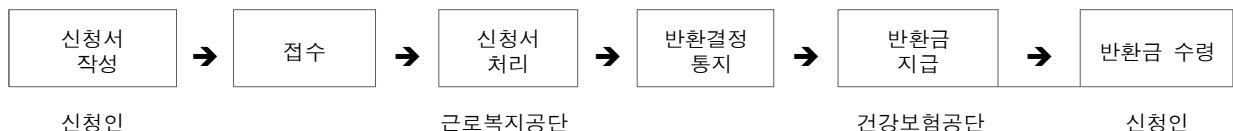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반환신청 계좌 사본(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 (반환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바탕색이 어두운 칸으로 표시된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신청계좌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대표자) 계좌,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명의 계좌를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보험사무 대행기관	명칭		인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신청명세

① 총신청액		② 보험료 납부 지원금		③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		④ 사업장 가입 지원금	
원		원		원		원	
보험료 납부 지원금 신청 명세		산정 명세				금액	
						원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 신청 명세	피보험 자격취득신 고 등	계				원	
		()분기					
		()분기					
	보수총액신고						원
	월 보수신고						원
	계						원
사업장 가입 지원금 신청 명세		산정 명세				금액	
						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험사무대행기관(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장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	수수료 없 음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 · 소멸신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 · 소멸신	
고) ① 법 제11조제1항(법 제48		고) ① -----법 제48		
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		조의2제10항제1호-----		
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		-----		
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		
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		-----		
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		
서(건설업 및 별목업의 경우		-----		
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관		-----		
계 성립신고서), 「고용보험		-----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		-----		
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		
·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		-----		
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		-----		
자”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		-----		
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산재보		-----		
험 노무제공자”라 한다) 종사		-----		
사업장인 경우는 별지 제2호의2		-----		
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공사비명		-----		
세서를 포함하며, 건설업 및 별		-----		

목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
부하여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② (생략)

③ 법 제11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건설업 및 별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 및 별목업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예술인·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폐업사실 증명원(휴업·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

_____.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8조의2
제10항제1호-----

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 ⑧ (생략)

제9조(보험관계 성립·소멸 등의 통지 등) 영 제8조(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보험가입 승인, 보험가입 불승인, 일괄적용사업 개시 완료)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에 따른다.

제10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 및 영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제56조의6제8항제1호 및 법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근로자 종사 사

-----.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보험관계 성립·소멸 등의 통지 등) -----영 제56조의5제9항제1호 -----

-----.

제10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 -----

-----영 제56조의5제9항제1호-----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제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8조의2제6항-----

③·④ (생략)

제15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① (생략)

② 사업주 또는 발주자·원수급인이 영 제56조의5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③·④ (생략)

제16조의3(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영 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13서식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근로자의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영 제56조의5제6항 또는 제7항-----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

----- 별지 제22호의13서식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계약서 사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예술인의 보수액 지급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삭 제>

<u>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월 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내역이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u>	
2. <u>예술인의 경우: 변경된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계약서 사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 다) 및 해당 예술인의 보수액 지급 관련 자료</u>	<삭 제>
제16조의4(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 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공단은 <u>법 제16조의6제1항·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 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 보험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 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는 전자 문서로 알릴 수 있다.</u>	제16조의4(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 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 <u>법 제16조의6제1항 및 제2항--</u> ----- ----- ----- ----- ----- ----- ----- ----- ----- -----.
제16조의5(월별보험료의 전자문 서 고지 등) ① <u>법 제16조의8제 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u>	제16조의5(월별보험료의 전자문 서 고지 등) ① ----- ---<u>법 제48조의2제10항제2호</u> - ----- -----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3 서식의 전자고지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법 제16조의8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제16조의6(보수총액 등의 신고)
영 제19조의7제1항·제2항 및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8
조의2제10항제2호 -----

-----.

제16조의6(월 보수 등의 신고) 영
제19조의7제1항 본문 및 제6항

제5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19서식의 보수총액 신고서에 따른다.

제16조의7(고용·노무 등의 개시·종료 신고) ① 영 제19조의7 제3항·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의 종료,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의 체결이나 종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1.·2. (생략)

② (생략)

제16조의9(휴직·전보 등의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휴업·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8서식의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에 따른 월 보수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24서식의 월 보수 신고서에 따른다.

제16조의7(고용·노무 등의 개시·종료 신고) ① 영 제19조의7 제4항 및 제7항-----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9(휴직·전보 등의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8항제1호---

-----.

② 영 제19조의7제7항제4호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근로자 전보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19조의7제7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휴직 종료일이나 휴업 등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17서식의 내용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19조의7제7항제7호에 따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8서식의 예술인·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10(보수총액의 수정신고)
법 제16조의11(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

② 영 제19조의7제8항제4호-----

--.

③ 영 제19조의7제8항제5호-----

-----.

④ 영 제19조의7제8항제7호-----

-----.

제16조의10(월 보수 등의 수정신고) -----법 제48조의2제10항제2호 -----

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0조(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영 제24조제1항·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2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 조정 또는 증액 조정의 통지(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의 월별보험료·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또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월 보수·보수총액·월 보수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

1. 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월 보수 수정신고서
2. 예술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2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3.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5서식의 월 보수액 수정신고서

제20조(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영 제56조의5제9항제2호 -----

제25조(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

제28조의2(보험료등의 경감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경감을 받으려는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으로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료등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9조(보험료의 충당·반환) ① 월별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28조의2(보험료등의 경감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보험료의 충당·반환) ① ----- 영 제31조제2항-----

다)에 따라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
지 제22호의4서식의 보수충액
신고서 뒤쪽 중 과납보험료 충
당신청서에 그 충당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개산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뒤쪽 중 과납보험료충당신청서에 그 충당 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3항(영 제56조의 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충당 또는 반환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5호

----- 보수충액신
고서, 별지 제22호의24서식의
월 보수 신고서 및 별지 제55호
의2서식의 월 보수액 신고서 --
-- 충당신청서 또는 별지 제34
호의4서식의 과납보험료 충당
· 반환신청서에 그 충당·반환
내역---.

② 영 제31조제2항

③ 영 제31조 제3항-----

서식의 충당·반환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④ 법 제23조제5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반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고용보험료(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⑥ (생략)

제31조(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27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입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제31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법 제48조의2제8항제3

-----.

④ 법 제23조제5항-----

-----.

⑤·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징수금의 납입통지) -----
-----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

-----.

제31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

-----법 제48조의2제10항제

제32조의3(분할 납부의 신청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

제32조의3(분할 납부의 신청 등)
① -----법 제48
조의2제10항제3호-----

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사업주는 법 제27조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주의 성명과 소재지
2. 분할 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3. 분할 납부의 총 기간 및 총 횟수
4. 각 횟수별 분할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5. 분할 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사유

②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

-----법 제
48조의2제10항제3호-----

-----.

1. -----
2. -----

- 3.-----

4. -----

5. -----

② -----법 제48
조의2제10항제3호-----

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③ (생략)

④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매달 납부할 금액은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 월별 보험료등의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32조의4(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한 사업주

-----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

-----.

제32조의4(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
-----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

의 납부 능력을 확인하여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1. ~ 3. (생략)

제32조의5(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4항(법 제48조의2제8항 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6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1. ~ 3. (생략)

제33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28조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

-----.

1. ~ 3. (현행과 같음)

제32조의5(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
-----법 제48조의2제10항 제3호-----

-----.

1. ~ 3. (현행과 같음)

제33조(공매대행 수수료) -----
-----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
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
다.

제33조의2(상속인 대표자 신고)

① 영 제40조의3제1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별지 제38호의7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상속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신고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영 제40조의3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

_____.

제33조의2(상속인 대표자 신고)

[illegible]

② -----영 제56
 조의5제9항제3호 -----

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38호의 8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제40조(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39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 3. (생략)

4. 법 제22조의2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낸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않은 경우

5. (생략)

제41조(증표) 공단은 법 제45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

-----.

제40조(납부기한의 연장) -----

---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2조의2제3항-----

5. (현행과 같음)

제41조(증표) -----

---법 제48조의2제10항제4호---

제48조의3제8항제4호, 제48조의
4제5항 및 제48조의6제13항제4
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에
게 별지 제52호서식의 공단 소
속 직원 증표를 발급한다.

제42조 (생 략)

<신 설>

제42조의7(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의 월 보수액의 정정 신고) ①
영 제56조의13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정정
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5호의
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
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산재보
험 노무제공자가 단기노무제공
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
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생 략)

-----.

제41조의2 (현행 제42조와 같음)

제42조(예술인의 보수총액 신고)

영 제56조의5제4항에 따른 예술
인에 대한 보수총액 등의 신고
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보수
총액신고서에 따른다

제42조의7(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의 월 보수액의 정정 신고) ①

----- 별지 제22호의2
5서식의 -----
----- 수정신고서-----
-----.

-----.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의11(플랫폼 운영자 등의 플랫폼 종사자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영 제56조의1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거나 정정하려는 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u>신고서</u>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플랫폼 종사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생략)	제42조의11(플랫폼 운영자 등의 플랫폼 종사자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 ----- ----- ----- ----- ----- ----- ---- <u>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5서식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수정신고서</u>----. ----- ----- ----- -----. ② (현행과 같음)
---	--